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778 제안년월일 : 2019년 7월 1일 제 안 자 : 운 영 위 원 장

1. 제안이유

○ 2018년 4월 설립된 '서울관광재단'과 시장 직속으로 신설(2019.7.25.)될 예정인 '서울민주주의위원회'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'서울민주주의위원회'를 추가함(안 제33조 제1항제2호).
- 나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중 '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'을 '서울관광재단'으로 변경함(안 제33조제1항제5호).
- 다.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

에 관한 규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러.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
제33조제1항제5호 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. 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

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7항,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9조제3항 중 "제6항, 제7항"을 "제4항, 제7항, 제8항"으로 한다.

제54조제2항 중 "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"를 "「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제1항제2호 러목 신설 규정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생략)	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행정자치위원회	2. 행정자치위원회
가.~더. (생 략)	가.~더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러.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3.~4. (생 략)	3.~4. (현행과 같음)
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	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
가.~사. (생 략)	가.~사. (현행과 같음)
아. <u>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</u>	아. <u>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</u>
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	
관한 사항	
자.~타. (생 략)	자.~타. (현행과 같음)
6.~10. (생 략)	6.~10.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~② (생 략)	제38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제3항은	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
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	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
관하여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제6항,	제3항을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제4항,
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	제7항,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
<u>한다.</u>	<u>아니한다.</u>
제39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~② (생략)	제39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	③
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	
제3항을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<u>제6항</u> ,	<u>제4항,</u>
<u>제7항</u> 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	<u>제7항, 제8항</u>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) ① (생 략)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	제54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<u>「서울특별시 행</u>	<u></u>
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	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